고흥군의회 공고 제2025－8호

「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5년 5월 2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

1. 제안이유

가.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,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공공자금 운용계획 수립, 평가지수 개발, 군의회 보고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하고,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·자문 등을 통해 공공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군수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 범위(안 제3조, 안 제4조)

다.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(안 제5조)

라. 공공자금 운용 원칙(안 제6조)

마.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(안 제7조)

바.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(안 제8조)

사. 교육 등(안 제9조)

3. **제정조례안**: 붙임

4. **조례안 예고기간**: 2025. 5. 2. ~ 5. 9. (7일간)

5. **의견제출**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1) 우편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고흥군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과장)

2) 전화: 061-830-6067, 팩스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1부.
2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흥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,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공공자금"이란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른 고흥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.
2. "금고"란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「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고흥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고흥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)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월별·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
2. 월별·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
3. 월별·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
4.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공공자금 운용 원칙)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,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·권고할 수 있다.

제7조(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.

1. 평균 이자수익률
2. 유휴자금 평균수익률
3. 금고 예금 잔액 비율
4.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,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8조(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) ① 고흥군금고를 지정·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「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보고받은 자금운영 및 재무 건전성 보고서를 연 1회 고흥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자금운영 및 재무 건정성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
2.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
3. 공공자금 이자 수입 총액
4.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교육 등)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간에 교육·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·관리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